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최상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4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최상국 의원, 서도원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달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 등 (안 제2조 ~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안 제4조 ~ 제5조)

3. 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하며, 의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